

	보도자료 2020. 12. 9.(수) 배포	
-----------------------------------------------------------------------------------	-----------------------------------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고등·평생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

-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 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 **【붙임】** 참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이번 법률안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 1 -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모델을 법 제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 국내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 **【붙임】** 참고

【붙임】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붙임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	--------------------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제 도입)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 (등록운영위원회)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둔다.
 - (취학 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하도록 하였다.
- 동 제정으로 인해
 -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small>공공누리</small> <small>초·중·고등학교</small> <small>교육기관</small>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교육기획보장과	담당자 연락처 (☎044-2031내선번호) 과장 박지영(6746), 정민주 사무관(65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
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대안
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 8 -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 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안 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 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2 -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 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위와 같은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직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수업, 단과대학,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동 제정으로 인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이러닝과	과장 김영훈(6428), 황현정 사무관(64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 15 -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17 -

제16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 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